#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7월 15일

나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7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7월 24일

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방 주 문

# 나. 제안이유

O 아파트 신축, 필지분할 등 지역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통·리·반을 신설 및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- O 장천면: 공동주택 명칭 변경
  - 상장2리 8~11반의 창덕아파트가 한울아파트로 변경
- O 형곡2동 : 중복 표기 등 오기정정, 필지 분할로 인한 지번 정정

통	반	기 존	개 정	비고
1통	1반	형곡동 185-3	삭제	중복지번 표기삭제 (1통 1반 185-1~185-12과 중복)
7통	4반	형곡동 165-1~165-3	형곡동 165-1~165-5	필지분할 등 현재지번 반영
	6반	형곡동 166	삭제	중복지번 표기삭제 (166번지 7통 5반과 중복)
	7반	형곡동 167-1~167-6	형곡동 167-1~167-8	필지분할 등 현재지번 반영
9통	1반	형곡동 316-1~326-9 316-6	형곡동 316-1~316-9 삭제	표기 오류 지번 정정 (326→316) 중복지번 표기 삭제 (9통 1반 316-1∼316-9와 중복)
10통	1반	형곡동 302-1~302-8	형곡동 320-1~320-8	표기 오류 지번 정정 (302→320)
	2반	형곡동 323-1~323-9	형곡동 323-1~323-12	필지분할 등 현재지번 반영
	8반	형곡동 333-1~333-4	형곡동 333-1~333-6	필지분할 등 현재지번 반영
12통	1반	형곡동 197-1~197-10	형곡동 197-1~197-17	필지분할 등 현재지번 반영
	3반	형곡동 195-1~195-9	형곡동 195-1~195-14	필지분할 등 현재지번 반영
	4반	형곡동 210-1~210-7	형곡동 210-1~210-11	필지분할 등 현재지번 반영
	5반	형곡동 194-1~194-6	형곡동 194-1~194-12	필지분할 등 현재지번 반영
	9반	형곡동 211-1~211-5	형곡동 211-1~211-3	중복지번 표기 삭제 (211-4,5번지 12통 6반과 중복)
19통	1반	-	형곡동 235-10~235-11	필지분할 등 현재지번 추가
	6반	형곡동 285-1~285-11	형곡동 285-1~285-14	필지분할 등 현재지번 반영
22통	6반	형곡동 376-8	삭제	중복지번 표기 삭제 (376-8번지 22통 5반과 중복)

#### O 인동동

- 16통 1~5반이 16통 6반으로 편입,
- 신축아파트(하늘채 디어반 1단지) 16통 1~5반으로 구역 조정

#### O 양포동

- 5통 내 신축아파트(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1·2단지) 편입 번지 삭제
- : 5통 1반 거의동 268, 289번지 삭제
- : 5통 4반 거의동 264, 279, 281, 304번지 삭제
- 통 반 변경
- : 30통 3반, 4반이 25통 7반, 8반으로 변경
- : 32통 8반, 9반이 7통 4반, 5반으로 변경
- 신축아파트(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1 · 2단지)통 · 반 신설
- : 57통 1~13반, 58통 1~10반, 59통 1~9반 신설

#### 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O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#### O 본 개정조례안은

• 행정구역 개편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통·반 조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#### O 검토 결과

-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현재 구미시는 읍면동별 통리반 가구수의 편차 해소가 필요한 실정이므로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통리반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리반별 가구수 편차를 조정하여 통리반장의 업무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 후 전반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함.

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 5. 토 론 요 지

- O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인구과밀 통리반이 없도록 적정한 인구수에 맞춘 통리반 조정이 필요함.
- 관내 각 통리반의 평균·최고·최저 인구수에 대한 통계자료 추출 및 자료 제출.
- 집행기관은 조례안 심사 출석 시 안건과 관련된 자료준비 및 현황 숙지를 철저히 하여 관련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갖추길 바람.
- 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